

예 산 총 칙

2016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344,845,798	10,345,374
일반회계		311,210,181	9,336,305
특별회계		33,635,617	1,009,069
기타특별회계	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839,880	25,196
	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982,537	29,476
	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	255,324	7,660
	주차장특별회계	440,293	13,209
	수질개선특별회계	30,684,303	920,529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	433,280	12,998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서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126,627천원으로 한다 .

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 한도액은 10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